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적 이해(Ⅱ)*

전 동 훈

행정자치부 세정과 행정사무관

나. 목적사업과 후생복지사업과의 관계

법인의 목적사업에 구성원의 후생복리를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후생복지사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판단으로서 조합의 경우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의 후생복지 목적으로 음식점업, 목욕탕업, 주유소업 등을 영위하는 경우 이를 인정하는 데는 조합원의 후생복리를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부동산인지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고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경우라면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판단기준은 수익금과 이용자 등을 고려하여 주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후생목적사업과 목적사업의 범위

‘신협’이 운영하는 목욕탕이 조합원과 비조합원의 이용요금 및 이용실태, 유사 목욕탕의 요금으로 보아 ‘영리목적’이어서 고유목적사업용 아니므로,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등 면제 안 됨(감삼2000-64, 2000. 5. 2)

* 이 내용은 2000년 제6호(통권62호)의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기초적 이해”의 연속 게재입니다.

[사례] 후생복지사업과 직접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신용협동조합 등 공공법인이 사무실 등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신용협동조합이 운영하는 예식장 사업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익사업으로서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 의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사료됩니다. (행자부 세정 13407-1214, 2000. 10. 18)

- 후생복지사업에 사용여부의 판단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는 경우라면 목적 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

[사례] 구성원의 후생복지사업의 범위 판단

축산업협동조합이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으로서 이용객 대부분이 준조합원이고 조합의 구역 안에 거주하는 개인까지 준조합원으로 규정하고 있어 사실상 일반인이 자유로이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용요금도 인근예식장의 것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을 볼 때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볼 수 없고 감면대상으로 보는 경우 일반인이 운영하는 예식장과 조세의 형평성 측면에서 어긋나므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행심2000-623, 2000.8.29.)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과 목적사업에 사용 판단

새마을금고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토지가 신용사업 등 그 자체에 직접 사용위한 것이 아니고, 매각하여 미회수채권 충당목적이므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위해 취득하는 토지’가 아니어서 취득세 등 면제 안됨(행자부 심사99-183, 1999. 3. 31)

4. 직접 사용

가. 임대업과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판단기준

임대용 부동산이 임대업을 영위하는 감면대상 법인이 직접 사용하던 자산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첫째, 임대용 부동산은 소유주인 당해 법인이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므로 감면대상이 아니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둘째, 임대용 부동산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것이 아니더라도 고유업무에 포함되어 있으면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지방세법상에서 『직접사용』의 용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바, 예를 들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유예기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고유업무에 정하여진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하여 취득세가 중과세 되는 것이며, 종교, 제사 등 비영리사업자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는 것이다. 그러면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소유 주체가 직접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사업에 사용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케 하는 경우에는 이를 직접사용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인가?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의 개념에 대하여는 별도의 명문의 해석 규정은 없으나, 비영리사업자나 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배제하거나 중과세하는데 여기서 그와 같은 과세 처분을 하는 기준은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쟁점 사항에 해당한다.

[판례] 학교법인이 취득한 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

구 지방세법(1991.12.14.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27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 제94조 제1항의 규정을 사립학교법 제28조, 같은법시행령 제12조 등 관계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학교법인이 교육용 기본재산에 편입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고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고 보아야 한다.(대판94누224, 1994. 10. 28.)

첫째, 직접사용을 당해 부동산 소유 법인이 그 부동산의 『사용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이는 직접 사용의 주체는 소유권자가 되고 그 객체는 해당 부동산이 되며, 사용용도 및 방법은 고유목적적이 되기 때문에 직접 사용의 의미는 소유권의 주체가 당해 부동산에 대한 사용권을 행사하는 데 고유 목적이라는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다.

둘째, 직접사용을 사용권과는 관계없이 『목적사업에 공여되는 것으로 보는 견해』이다. 사용권을 가진 주체가 목적사업에 공여하는 경우를 직접사용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사용권과는 전혀 관계없고 그 고유업무만을 기준으로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공여되어 이를 직접 사용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러나 직접사용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를 판단하는 경우의 직접사용과 비교세, 감면법인이 목적사업에 직접사용의 범위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는 감면법인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의 범위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고유업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판례가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직접사용은 소유주체가 직접 사용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도 정관 목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에 공여되는 것이라면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된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지방세법상 직접사용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주체가 사용권한을 행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감면법인이 고유목적사업에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직접 사용으로 보아 감면대상으로 보고 있는 사례도 있다.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인정한 사례>

[판례]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사용하는 재산여부 판단기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제18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재산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대판86누36, 1986. 7. 22.)

[판례] 비영리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여부 판단기준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재산취득에 관한 규정은 지방세법(1986.12.31 법률 제3878호개정전) 제107조 제1호의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취득으로 볼 것인가의 여부는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할 것이고, 정관의 규정은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 하나의 참고자료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간호

전문대학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병원을 개설하여 그 학생들의 실습소로 이용하고 있고 위 병원은 영세민 등에 대하여 무료진료 또는 감액진료를 하고 있으며 병원에서 나오는 수익금은 모두 위 학교법인의 자체운영 및 학교의 유지, 병원의 시설관리비에 충당하였다면, 비록 병원건물이 학교법인의 정관상에는 교육용 기본재산이 아닌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되어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고, 또 사업목적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위 병원건물의 취득은 위 법조에 의하여 취득세의 부과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판87누641, 1987. 10. 13.)

[판례]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판단

구 조세감면규제법(1981.12.31 공포 법률 제3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 제10조 제1항에서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당해 재산의 사용용도가 직접 그 고유의 업무에 사용하는 것이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사용의 방법이 원고 법인 스스로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거나 혹은 제3자에게 임대 또는 위탁하여 그와 같은 용도에 제공하는지 여부는 가리지 않는다.(대판84누297, 1984. 7. 24.)

[판례]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의 의미

지방세법 제234조의12 제2호 소정의 종합토지세 비과세대상이 되는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 함은 제사 등의 시설 또는 부지로서 현실적으로 제사 등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고 있는 토지를 말하며 분묘기지 및 금양림이나 위토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만으로는 위 부동산을 현실적으로 제사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92누4499, 1992. 11. 10.)

[사례] 임대업용 토지에 대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판단

토지를 취득하여 유예기간내에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을 등재한 후 임대한 경우라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 아 807, 1998. 10. 30)

[사례] 직접 사용의 범위판단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이연 및 특별부가세의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가 있음(국세청 법인46012- 648, 2000. 3. 8)

[사례] 임대용부동산의 사업용에 직접사용한 부동산의 판단여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7호, 동법 제12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임대용으로 사용하던 부동산을 현물출자하여 새로운 내국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됨(행자부 세정13407-539, 2000.4.21)

- 임대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직접사용한 부동산으로 볼수는 없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법인이 사업에 직접사용하던 자산으로서 판단하여야 함.

[사례] 무상사용과 고유업무에 직접사용 판단

농업협동조합이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고 있는 건축물의 부속토지의 일부에 지방자치단체가 농산물직거래장터를 장려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건축물을 건축한후 조합으로 하여금 무상으로 농산물직거래장터용으로 위탁사용하게 하는 경우라면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는 토지로 판단됨.(행자부 세정13407-776, 2000. 6. 21)

[판례]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 판단

보험사업자가 그 재산을 운용하는 방법의 하나로 총 자산에 대한 100분의 15의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는 것은 그 고유목적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4 제1항 소정의 비업무용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4항 제12호(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로 신설되고, 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삭제된 것)가 삭제되었다 하여 위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대판 97누10741. 1998. 5. 12)

<임대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한 것으로 부정한 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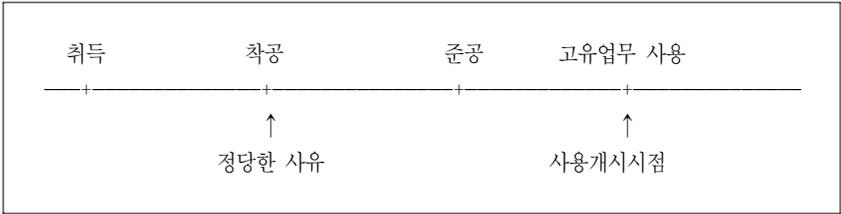
[사례] 임대와 직접 사용 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 제9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부동산을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이 임대하고 있는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는 임대업이 청구인의 고유업무에는 해당되나 청구인이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는 볼 수 없다 하겠으므로 취득세 등의 추징대상이 된다 하겠다. 그러므로 처분청이 이 건 쟁점건축물 및 이 건 토지에 대하여 일반 세율로 취득세 등을 추징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행자부 심사 99-185, 1999. 3. 31)

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사용개시 시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개시시점은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실상의 목적사업에 현실적으로 사용하는 시점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형질 변경신청, 건축공사중 등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는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사중인 경우는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사용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유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있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에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는 것이고 사실상의 고유업무에 직접공여되는 시점부터 사용개시시점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5. 수익사업 : 범위와 제외대상

가. 수익사업의 범위

수익사업의 범위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 (수익사업의 범위) 제1항에서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하며, 비영리 법인의 수익사업의 범위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의한 각 사업중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말하며, 다만, 다음 각호의 사업을 제외한다.
 - (1) 축산업(축산관련서비스업을 포함한다) · 조경 및 관련서비스업외의 농업
 - (2) 사업서비스업중 연구 및 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과 비영리내국법인이 외국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에 대하여 당해 외국이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당해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이하 “본점등”이라 한다)가 있는 비영리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영위하는 기술용역사업
 - (3) 교육서비스업중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를 경영하는 사업
 - (4)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중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업

- (5) 연금 및 공제업종 다음 각목의 사업
 - 가. 국민연금법에 의한 국민연금사업
 - 나. 특별법에 의하거나 정부로부터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가 영위하는 사업(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에 한한다)
 - (6) 비생명보험업종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사업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사업
 - (7)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중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6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당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 사용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당해 고정자산의 유지·관리 등을 위한 관람료·입장료수입 등 부수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이를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고정자산으로 본다.)으로 정하는 것을 제외한 고정자산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그 이자소득에 대하여 법인세가 부과되는 것을 제외한다)을 매도함에 따른 매매익(채권등의 매각익에서 채권등의 매각손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을 말한다.

나. 수익사업 제외 범위

비록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에 해당되더라도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고등교육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

료업

2.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이 경영하는 의료업

[사례]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이에 따른 취득세 등 관련 지방세가 비과세 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13407-자732 98. 7. 24)

다. 수익사업과 감면법인과의 관계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부동산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규정하고 있는 바, 농협 등의 법인의 고유업무의 범위에는 수익사업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농협 등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수익사업이 목적사업인 경우 감면 판단

공공법인이 등기부상 당해 수익사업이 고유업무에 등재되어 있다면 수익사업에 사용한다 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 대상임.(내무부 세정13407- 60, 1997. 1. 21)

6. 비과세 · 감면의 대상

가. 비과세 · 감면대상 재산의 범위

비과세 · 감면대상법인의 재산이나 부동산에 대하여 비과세 · 감면하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분에 대하여 감면하는 것이며 그 대상은 『재산』이라고 할 경우 부동산뿐만 아니라 차량, 저당권, 전세권 등을 포함하는 개념이나 『부동산』으로 표현된 경우에는 토지와 건축물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량이나 기타의 권리

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사례] 유치원 등에 대한 비과세 범위

유치원 또는 영유아보육시설 용도로 지정된 부동산을 그 설립인가 전에 취득한 경우라 하더라도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당해 사업인가를 받아 사업용으로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면제대상임(내무부 세정13407- 555. 1997. 6. 3)

[사례] 종교용 부동산의 비과세 감면 범위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비과세하나, 교회 공원묘원의 경우에 해당되지 아니함(행자부 세정 13407- 이628, 1998. 10. 8)

[사례] 가정보육시설에 대한 비과세 범위 판단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주거용 아파트를 취득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면서 가정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대상으로 볼 수가 없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30- 216, 1999. 2. 20)

또한, 『취득하는 부동산』의 범위에는 취득세에서 판단할 때 지목변경이나 개축, 대수선과 같은 간주취득의 경우에 비과세나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이는 당해 부동산의 증가된 경제적 가치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그런데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부동산전세권등기, 부동산지당권등기, 공유물분할등기 등에 대한 등기가 포함되는지와 등록세 비과세, 감면여부를 판단하면 부동산과 관련한 권리의 취득이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도 감면하여야 타당하다.

[사례] 지목변경과 부동산 취득의 범위포함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단체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의 경우에는 취득세비과세 대상이므로 사찰을 건축하기 위하여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 지목변경한다면 그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세는 비과세대상

임(행자부 세정13407- 114, 1999. 1. 27)

[사례] 취득하는 부동산 등기에 부동산전세권, 저당권의 포함여부 판단

다. 비과세 · 감면세목과 감면세액의 범위

지방세 비과세 · 감면대상 세목은 관련규정에서 규정된 세목 범위내에서만 비과세 · 감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열거되지 아니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50%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다른 세목은 이에 해당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병기 고지되는 공동시설세나 도시계획세는 감면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에 부가하여 과세되는 교육세나 농어촌특별세는 감면받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기 때문에 비과세나 감면의 효과가 있는 것이다.

[사례] 농특세 감면 판단

지방세법 제2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법제5조제1항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세액(취득세의 감면세액에 100분의 2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취득세 과세분에 대한 세액(지방세법에 의하여 납부하여야 할 취득세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더한 가액이 농어촌특별세액임(행자부 세정 13407-1031, 2000. 8. 21)

[사례] 도시계획세의 감면 판단

도시계획세는 비록 종합토지세 부과시 함께 과세되기는 하나 (이를 종합토지세와 병기하여 고지한다고 합니다) 종합토지세와는 독립된 별개의 세목이므로 구세감면조례에 의하여 종합토지세가 50% 감면되더라도 별도로 도시계획세에 대한 감면규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세는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1047, 2000. 8. 28)

[사례] 취득세 · 등록세 비과세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 및 제12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9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하여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은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 되는 것이나 종중의 경우는 규약에 제사가 목적사업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실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비과세됨.(행자부 세정13407- 161, 2000. 2. 7.)

또한 비과세나 감면의 세액 범위는 법령의 규정에 의거 그 범위가 결정되어 지지만 감면의 경우 감면세액을 근거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농어촌특별세의 세액산출기초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감면세액의 범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중과세하는 경우 이에 대한 감면의 판단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면 취득세나 등록세의 50%감면대상 법인이 3배중과세되는 경우 그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가 어떻게 산정되는 것인가?

[예시] 대도시내 신설법인이 50%감면법인으로서 일반세율로 적용된 등록세를 10억원 산정되고 그 중 5억원은 납부대상, 나머지 5억원은 감면대상인 경우 농어촌특별세액의 산출방법과 세액은?

- ① 등록세 납부세액 : 5억원 × 3배 = 15억원
- ② 농어촌특별세 : 감면 등록세의 세액 5억원 × 3배 × 20% = 3억원
- ③ 납부세액 총액 : 15억원 + 3억원 = 18억원

[사례] 중과세액 감면시 농어촌 특별세의 과세표준산정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도시내에서의 법인의 설립과 그 설립 이후의 부동산등기에 대한 세율은 같은법 제131조 및 제137조에 규정한 당해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7호에 의거 감면을 받는 등록세는 중과세액이 되는 것이며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의 규정에서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은 감면을 받는 등록세의 감면세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록세 중과세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행자부 세정 13407-516, 2000.4.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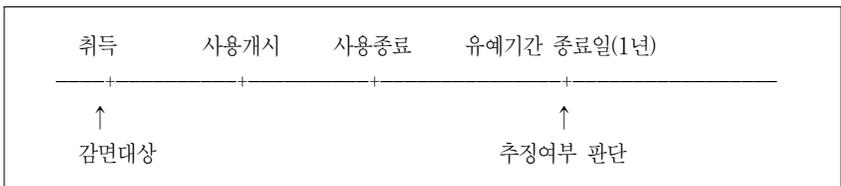
- 농어촌특별세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이므로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고 중과세가 되는 경우에는 중과세액이 감면세액이 되

는 것임

7. 추정요건과 유예기간종료일

통상적으로 지방세법상에는 비과세나 감면을 하되 일정한 유예기간내에 당해 법인의 사용목적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추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입법례에 해당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지방세법제290조 (공공법인에 대한 과세면제) 제1항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제1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 종합토지세 ·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한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당해 법인이 유예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면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여도 추정을 할 수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유예기간종료일 현재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에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인가?

조문상 이를 살펴보면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경우라면 단 하루라도 사용하고 매각하면 추정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나, 이를 판단하는 시점은 유예기간 종료일 현재에 당해 법인의 목적사업 사용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유예기간 종료일이전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한 실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첫째, 유예기간내에 일부 사용하고 매각하는 경우 의 비과세 · 감면 추정판단방법은 비과세 · 감면받은 후 사용을 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유예기간을 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이라도 비록 사용을 한 후에 타인에게 매각하는 경우 유예기간을 종료하는 날을 기다릴 것 없이 바로 추정사유에 해당하여 추징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추정 사실이 발생한 경우 이를 그 시점에서 적용할 규정에 의거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둘째, 유예기간내에 일부사용하고 사용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 비과세 · 감면 추정판단방법은 타인에게 일시 사용후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면 유예기간 종료일에 이에 해당여부를 판단하여 추정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셋째, 유예기간내에 사용하고 유예기간 종료일이후에 매각, 임대 등을 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또는 감면된 취득세, 등록세를 추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판례] 취득세 등 추정범위에 관한 판단기준 법률

구 지방세법(1991.12.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제1항 단서, 제128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고유업무의 범위는 법인이 재산을 취득하여 일정한 유예기간 내에 이를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함으로써 취득세와 등록세의 추정원인 사실의 발생 당시 법인의 목적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이전인 재산의 취득 당시 또는 추정원인사실 발생 이후의 목적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판93누15632, 1993. 11. 9.)

[사례] 유예기간내에 사용하다가 임대사업을 하는 경우 비과세추징사유

지방세법 제107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종교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취득일부터 3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 종교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취득후 2년 6개월동안 당해 사업에 사용하다가 타 교회에 동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사용한 경우에 해당되어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행자부 세정 13407-502, 2000. 4. 12)

- 비과세의 추정시기의 판단은 유예기간경과시점에 판단하는 것이므로 유예기간내에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유예기간경료시점에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추정대상이 되는 것임.

[사례] 취득세 등 감면이후 추정여부

지방세법 제1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를 비과세·과세면제 또는 경감받은 후에 당해 과세물건이 취득세 과세대상 또는 추정대상이 된 때에는 그 사유 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음.(행자부 세정13407-679, 2000. 5. 25)

8. 비과세 · 감면의 중복적용

가.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중복적용

지방세의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이 중복적용을 받을 경우 비과세나 감면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검토하면 우선 지방세법제294조 (중복감면의 배제)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가 감면되는 규정이 지방세법과 감면조례, 조세특례제한법 등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라도 중복감면을 할 수가 없으나,

비과세와 감면규정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만 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비과세하고 감면을 모두 할 수가 있는 것이다. 이때 적용순서는 비과세규정을 먼저 적용하고 감면규정을 나중에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시] 취득세 납부세액이 500만원이나, 납세자는 토지수용등으로 대체취득에 기인한 보상금범위인 비과세 세액 300만원이 있고, 자경농민의 농지취득으로 취득세를 50%감면을 받는 경우의 비과세와 감면규정의 적용방법?

① 납부세액 500만원 - 비과세세액 300만원 = 납부할 세액 200만원

②감면세액은 비과세받은 후 납부할 세액 200만원의 50%이므로 실제 납부세액은 100만원에 해당되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

지방세법 제294조에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지방세법 제109조 규정의 비과세 요건과 동법 제261조 규정의 감면요건 모두 해당될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과 감면규정을 각각 적용하는 것이므로 지방세법시행령 제79조의3 규정의 보상가액 범위내에서는 취득세·등록세를 비과세 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하여는 50% 경감함.(행자부 세정 13407-자312, 1998. 5. 15)

나. 감면규정의 중복적용여부와 추정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만약 2개이상의 감면규정의 의거 동일한 감면율에 의거 감면을 받는 경우 감면받는 본세에는 그 감면세액이 동일하기 때문에 실익이 없으나 감면세액에 의거 납세하여야 하는 부가세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경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구 시도의 지방세 감면조례에 의거 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규정과 사업양수도로 인한 감면규정이 중복하여 적용하는 경우로서 면제규정이 중복적용되었으나 중복적용되는 규정에 의거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는 어떤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은 비과세되고, 어떤 규정(사업양수도에 따른 감면)은 과세되는 규정이 있을 경우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규정(금융부채상환용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중복감면을 판단하는 경우에도 개별물건별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면요건의 성립요건이 서로 상이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각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는 중복감면이라고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중복감면은 동일 사실에 대하여 감

면하는 규정이 2개상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1개의 감면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1개의 감면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지 감면요건이 각각 상이하는 경우라면 이를 각각 달리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현행 지방세법 제270조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감면) 제1항규정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대부금을 초과하는 부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며, 동법에 의한 대부를 받기 위하여 제공하는 담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시도세 감면조례 중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규정은 85제곱미터 이내의 공동주택을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은 대부금범위를 초과하면 초과부분은 감면이 되지 아니하나 대부금으로 공동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비록 대부금 초과부분이 있더라도 감면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 감면은 감면조례를 적용하여 감면하라는 것이다.

[사례] 조특법에 의한 추정사유의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4호 및 제120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32조 현물출자 방식의 법인전환으로 사업용재산이 양도되는 경우라면 서울특별시세 감면조례 제19조 제1항 단서규정의 취득세·등록세 추정사유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행자부 세정13407-639, 2000. 5. 19)

- 사업양수도로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감면을 받은 경우에는 비록 시도세감면조례에 의한 추정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과 중복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일한 사업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여부는 사업장 전체를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므로 1999년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 금융기관에 담보물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서 1997. 6. 30 이전에 성립한 금융부채 상환을 위하여 당해 금융기관에 동의를 얻어 매각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8조(기업의 금융부채 상환

에 따른 매입부동산에 대한 감면)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가 면제되며, 나머지 담보물권이 설정되지 아니한 부동산의 경우 당해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를 다른 기업에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에 해당된다면 경상남도세감면조례 제29조(기업간 사업양수도로 인한 양수재산에 대한 감면)의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여부를 판단해야 함. (행자부 세정13407- 91, 2000. 1. 22.)

다. 감면신청과 관련규정의 적용방법

납세자가 지방세 감면을 신청하는 경우 납세자가 신청하는 감면규정에 의거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나 잘못 감면신청을 하거나 추정하는 경우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을 적용하여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또한, 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관련 규정상 감면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이상 직권으로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는 지방세법 제292조 (감면신청)의 규정에 의거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하나, 시장·군수가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근거하는 것이다.

[사례] 지방세 감면규정 적용

지방세법 제294조에 의하여 동일한 과세대상에 적용할 감면규정이 2 이상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납세자가 착오로 감면율이 낮은 조항을 선택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하더라도 납세자에게 유리한 규정으로 변경하여 감면신청을 할 수 있다. (행자부 세정13407-192, 2000. 2. 15.)

[사례] 감면신청과 지방세 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2조 및 동법시행령 제231조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감면대상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지방세감면신청을 관할 시장·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신청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감면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118 99. 1. 27)

9. 추정요건과 중과세 추정적용

가.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지방세를 부과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정하여야 마땅하나 추정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추정을 할 수도 없지만 중과세 추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중과세를 추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에 따른 추정도 할 수 없다할 것이다.

현행 지방세법상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274조 (법인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이하 이 절에서 “과밀억제권역”이라 한다)안에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설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매각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도시외의 지역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이전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라는 규정과 『제275조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제1항에서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외의 지역으로서 공장설치가 금지되거나 제한되지 아니한 지역으로 이전한 후 당해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라고 감면만 하는 규정만 있고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는 경우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서 중과세요건에 해당되거나 중과세 추정을 위하여 우선 감면세액을 추정하는 추정규정이 먼저 있어야 하고 나중에 추정요건이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중과세요건을 구비하였다면 중과세로 추정되지만 일반과세로서 추정조항이 없어 일반과세로도 추정

이 되지 아니한다면 중과세로도 추징이 되지 아니하는 것이다.

[판례] 기준면적 초과토지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판단

1. 구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로 개정된 후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0조의 3 제1항 본문은 그 소정의 이른바 공공법인이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하나로 제10호에서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신용협동조합연합회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를 들고 있고, 위 제1항 단서에서는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취득재산을 그 고유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경우 직접 사용의 범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둔 바 없으므로, 당해 공공법인의 사업목적과 취득목적은 고려하여 그 실제의 사용관계를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면 될 것이고, 취득세 중과대상인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구지방세법시행령(1990. 6. 29 대통령령 제13033호로 개정된 후 1991. 12. 31 대통령령 제135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 4는 이에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누 8211, 8228 판결 참조).

그리고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고 나아가 면제대상주체가 법인이라서 다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해당된다 하여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를 추징하기 위하여는 먼저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을 충족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만약 면제된 취득세의 추징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할 수 없는 처지라면 나아가 법인의 비업무용토지에 대한 취득세 중과규정인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제112조의3에 따른 추징도 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누 8019 판결 참조).

2.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제10호 소정의 법인인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뒤 1년 이내에 그 중 그 지상건물을 예금취급소로, 그 부지를 뺀 나머지 부속토지를 고객 및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인 바, 이 경우 원심스스로

위 부속토지가 원고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어 이에 의하면 위 부속토지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소정의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요건조차 갖추지 못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 4 제1항 및 제3항 제5호의 각 규정을 적용하여 위 제5호 소정의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 부분이 구지방세법 제112조 제2항이 정한 법인의 비업무용토지로 간주된다고 하여 위 제112조 제2항의 중과세율에 의한 취득세 추정대상이 된다고 한 원심의 판단에는 구지방세법 제110조의 3 제1항 단서가 정한 추정요건인 직접 사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면제된 취득세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대판 98두 12949, 1999.10.8)

[사례] 비과세 법인의 취득세 추정기간

- 1) 구 지방세법(1990. 12. 31 법률 제4269호) 제110조 제1항 제2호와 구 지방세법 시행령(1986. 12. 31 대통령령 제12028호) 제8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에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여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비과세된 세액이 추정됨과 동시에 취득세가 중과되고
- 2) 지방세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는 부과할 수 있는 날(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하여는 비업무용 토지가 된 날부터 30일 되는 날의 다음날, 추정사용이 발생하여 추정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5년간은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행자부 세정 13407-458, 2000. 4. 1)

[사례] 비과세추징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판단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하였으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였으므로 지방세법상 규정하고 있는 수익사업용 토지로 볼 수 없는데도 수익용 기본재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본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위의 규정에서의 학교를 경영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취득한 토지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한다」 함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 체육장 등과

같이 당해 토지의 사용 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인데, 청구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등재만 하였을 뿐, 취득일부터 4년 6월이 경과한 이 건 심사청구일 현재까지 취득당시와 마찬가지로 임야 상태로 방치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이상, 교육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행자부 심사2000-108, 2000.2.23)

- 토지취득후 1(3)년내에 수익사업을 개시하거나 3년내에 교육용에 직접 사용않고 취득상태로 방치한 경우로서 비업무용토지에 해당함

나.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의 중과세판단

지방세를 비과세하거나 감면을 한 후 유예기간내에 그 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하여 추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면 추정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과세로 일단 추정을 할 수 있고, 그 요건이 중과세 추정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면 중과세로도 추징할 수가 있는 것이다.

10. 연부취득과 비과세·감면범위

연부취득한 경우 지방세의 비과세·감면의 범위는 감면기간내에 연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이를 인정하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 바 이를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지방세의 비과세규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비과세를 하는 경우(예를 들면 대체취득으로 인한 비과세는 마지막 보상금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에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와 감면규정에서 일정한 기간내에 취득하는 경우에만 감면을 하는 경우(예를 들면 벤처창업중소기업에 대한 감면은 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감면)이 있는 바, 대금지급기간을 2년이상 기간을 두고 어떤 물건을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기간이나 감면기간을 경과한 후에 연부취득하는 경우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으로 판단할 것인가로서 연부취득은 비록 최

종연부금(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형태의 취득이지만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매연부금 지급시 취득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매 연부금지급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보고 부과세 또는 감면여부를 판단하여야 하기 때문에 부과세기간(마지막 보상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내) 또는 감면기간(벤처기업으로 지정받은 날로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여야 부과세 또는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례] 비영리법인의 목적사업에 사용개시일의 판단

지방세법 제107조 규정에 의한 취득일은 연부취득의 경우 최종 연부금 지급일(최종 연부금 지급전에 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일)을 말함.(행정부 세정 13407-786, 2000. 6. 22)

[사례] 금융부채상환용 부동산의 취득감면

1. 「지방세법 제7조 및 제9조에 의한 불균일과세 및 과세 면제를 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필요에 따라 결정할 문제이며, ... 그러한 조례를 어떠한 내용으로 제정할 것인가의 여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속하는 것」(대법원 '96. 1. 26 선고, 95누 13050 참조)이므로 기업의 금융부채 상환에 따른 매입 부동산에 대한 감면조례를 서울특별시와 경기도가 서로 상이하게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경기도도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2806호, 1998. 5. 18로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9조의2 제2항의 개정 규정은 1998년 1월 1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1998. 1. 1 이후 1999. 12. 31 이전에 매매계약이 체결

-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0. 1. 1 이후 일시급 또는 할부금에 의해 대금 납부가 이루어지더라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면제대상에 해당됩니다.
3.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부칙(조례 제3504호, 1998. 5. 25 개정된 것)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23조의2의 개정 규정은 조례 시행일 이후 이 조례 적용시한 만료일(1999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조례 시행일 이후 1999. 12. 31 이전에 취득한 부동산이라면 2000. 1. 1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되더라도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1999. 12. 31 이전에 지급된 연부금의 범위에 한하여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되는 것임.(행자부 세정13407- 167 '99. 11. 18.)

11. 해석의 변경과 추정판단시기

지방세를 비과세·감면받은 이후 해석을 변경하여 추정하고자 하는 경우 적용시점은 해석을 변경한 이후의 과세요건이 발생하는 부분부터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며, 종전까지 소급하여 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이는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 제3항에 의거 『세법의 해석 또는 국제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의 근거하여 지방세법령의 해석을 변경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소급과세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

[사례] 채권보전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판단

지방세법 제29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의 목적사업을 해석함에 있어서 채권보전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이를 신용사업과 관련된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세·등록세를 감면하는 것으로 운영하던 것을, 1998. 1. 30 행정자치부(구 내무부) 심사결정(내시 제98-14호)에서 채권보전용은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결정에 따라 해석기준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이 같은 새로운 해석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1998. 1. 30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되는

것부터 적용하여야 할 것(행정자치부 세정 13430-434, 1999. 4. 13)인데도, 1995. 5. 17에 취득하고 1995. 8. 18 처분청이 감면 대상으로 결정한 이 건에 대하여서까지 새로운 해석을 적용하여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 처분 또한 잘못이라 하겠다.(행자부 심사 99-576, 1999.9.29)

- ‘농협’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경우 신용사업관련 부대업무로 보아 취득·등록세 감면됐으나, 해석기준 변경으로 1998. 1. 30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감면대상에서 제외함

IV. 과점주주의 부과세 · 감면적용

1. 과점주주의 부과세 · 감면의제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법인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를 제외한다)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 법인의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 입목 · 항공기 · 선박 · 광업권 · 어업권 · 골프회원권 · 콘도미니엄회원권 또는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법 및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세 또는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단서 규정의 적용부분은 납세자가 감면되는 물건을 취득하는 경우 부과세 · 감면되는 지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에 대하여 과점주주에 대하여 부과세 · 감면되는 지에 대하여 견해가 발생되고 있다.

2. 과점주주의 의제기준

과점주주가 취득하는 물건 중에서 부과세 또는 감면대상이 되는 과세물건이 있는 경우에는 부과세 또는 감면을 하여야 하는 바, 이 경우 취득대상물건이 지방세법 또는 타 법령에 규정에 의하여 취득세가 부과세 또는 감면이 되는 경우에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부과세 ·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과점주주에 대한 부과세 또는

감면은 누구를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가?

첫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취득물건이 취득세면세점(과표가 50만원)이하의 물건이거나 누구든지 취득하더라도 비과세하는 물건(예: 존속기간이 1년미만의 가설건축물의 취득)인 경우에는 과점주주라도 비과세하거나 면세하는 것이다. 이와같이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하여 감면하거나 비과세 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라고 하더라도 비과세 또는 감면을 하게 되는 것이다. 즉, 법인합병으로 주식을 교부받음으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713 '94. 9. 28 참조)

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주식 발행법인은 감면대상법인이기 때문에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면제 또는 감면을 받게 되는 경우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인가? 산업단지내 공장용 부동산을 신·증설하기 위하여 취득하게 되면 지방세법 제276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세를 면제하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할 수가 없다고 보는데 그 이유는 과점주주는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주식발행법인의 부동산등을 간주취득하는 것이므로 당해 부동산등을 공장용으로 신축 또는 증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및 제120조 규정에 의거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주식발행법인이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법인전환 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다.(내무부 세정 13407-221, 96.2.24 참조)

명의신탁해지로 인하여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규정에 의하여 과점주주의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으며, 산업단지에 최초 취득으로 인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 과점주주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점주주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 (내무부 세정 13407-691, 97.6.28참조)

둘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은 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간주하는 것이므로 주식발행법인이 비과세 또는 감면되는 경우에는 과점주주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이에 대한 논거는 다음과 같다.

- ① 절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상기의 논거와 같다.
- ② 상대적 비과세 또는 감면대상

주식발행법인이 부동산등을 취득한 것은 과점주주에게도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식 발행법인에게 취득세를 그 물건에 대하여 감면을 한 경우라면 과점주주에게도 감면을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이에 대한 기본적인 논거는 간주취득으로 의제 하는 데 있다. 예를 들면 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등에 대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전액 감면하는 바, 창업일로부터 2년 이내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경우에는 전액 감면하여야 할 것인가? 과점주주는 창업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없다고 볼 수 있으나 과점주주도 창업한지 2년 인 경우에는 사업용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감면을 하여야 할 것이다.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비과세 및 감면여부 판단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규정에 의하여 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된 때에는 그 과점주주는 당해법인 소유자산중 부동산·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당해 비상장법인이 구지방세법('97. 8. 30. 법률 제540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와 건축물에 대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하여 당해법인의 과점주주에게도 납세의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동봉한 내무부 심사결정 제'97-99호, '97. 3. 26 참조) (행자부 세정 13430-290 99. 3. 10)-최근이 사례는 변경되어 적용하지 아니함.

[사례] 과점주주의 면제여부

구조세감면규제법 제113조제4호 및 제114조제3호 규정은 법인전환에 따른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이므로 법인 전환이후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이 성립되었을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105조제6항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90%전체분에 대하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음.(내무부 세정

13407 - 221, 96. 2. 24)

[사례] 과점주주의 납세의무 여부

구지방세법('94.12.31 이전) 제110조의3제2항제1호 규정에 의해 공업단지 또는 유치지역내에서 공장용 부동산을 취득후 2년 이내 조세감면규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사업양수도 방법에 의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매각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어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추징되지 아니한다. (내무부 세정 13407-1366, '96.11.27)

[감사심] 과점주주에 대한 비과세, 감면의 적용

당해 법인이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부동산 등은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과점주주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비과세 또는 감면하는 것이 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위 법인을 설립할 때 현물출자된 이 사건 부동산과 차량 운반구중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같이 차량운반구는 취득세 면제대상이 아니어서 과점주주들에 대하여 이를 취득함에 따른 취득세 부과처분한 것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나, 건물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관계법령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고 공장용지는 구 경상북도농외소득원개발사업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관계규정에 따라 그 취득세가 면제된 것이어서 이를 취득한 것으로 의제하는 청구인들에 대하여도 그 취득세를 면제하는 것은 타당함.(감심제349호, 1999. 11.23)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주주 또는 사원으로부터 취득하여 과점주주가 된 경우라도 지방세법 및 조세감면규제법 등에서 감면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과점주주에게도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감면되는 것임(내무부 세정 1268- 5664, 1981. 4. 11)

[사례] 과점주주의 취득세 감면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AD주식회사가 외국인

투자비용에 해당하는 감면대상세액만큼 취득세 감면을 받고 과점주주가 될 당시 그 감면기간이 경과되지 아니 하였다면 지방세법 제105조 제6항의 단서규정의 취지에 따라 과점주주의 외국인 투자 지분에 대한 취득세는 감면대상이 됨.(행자부 세정 13407 - 734, 2000. 6. 10)

V. 신뢰보호의 원칙적용과 비과세 · 감면규정의 개정

1. 신뢰보호의 원칙적용요건

지방세법의 법률관계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하는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여야 하고, 둘째,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무엇인가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다.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를 표명 ②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 ③ 납세자의 경제행위 ④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가 발생된 경우 |
|---|

이와 같이 납세자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적용법률은 비록 과세요건발생당시의 개정된 신법이 적용되는 것이 조세법 논리로서는 타당하겠으나 종전의 법률을 적용하여 비과세하거나 면제하여야 하는 것이다.

[판례] 신뢰보호원칙적용의 일반론

1. 세법의 개정이 있을 경우에는 개정 전후의 법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야 함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당연하다 할 것이나, 세법이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구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마땅히 구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2. 지방세법 부칙(1994. 12. 22.) 제1조는 납세의무가 성립될 당시의 세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일반 원칙에 서서 그 적용시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고, 부칙 제6조는 이와 같은 법률불소급의 원칙에 대한 예외로서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세법이 개정된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예외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의 법률을 적용한다는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판97누11843, 1999. 7. 9.)

2. 비과세 · 감면규정의 개정시 적용범률

가. 과세권자의 공적견해의 표명여부의 판단

납세자의 비과세 또는 감면과 관련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하여 무엇이 과세권자의 공적인 견해표명이라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 그 범위는 법령, 고시, 조례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에 기하여 비과세나 감면을 받은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과세권자는 꼭 지방세의 과세권을 가진 자만 포함되는 것인지 또는 지방세 과세부서의 협의를 받거나 협의를 받지 아니한 과세권자를 포함하여 의미하는 것인지를 그 공적인 견해를 표명하는 과세권자는 행정관청의 내부적인 업무분장에 관한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하여는 협의여부등이 문제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단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책임 있는 지위에 있는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이루어짐을 요한다라고 하겠으며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사례] 감면조례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

납세의무의 성립시기가 면제규정을 삭제하는 법령 개정이 있는 이후라 하더라도 사업시행인가 등의 원인행위가 개정된 법령 시행 이전에 이루어졌다면 납세자에게는 보호받아야 할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봐야 하므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조례가 시행되던 1992.8.13. 주택개발재개발사업시행인가를 받아 1994.3.25. 이건 건축물공사에 착공하여 1997.12.31. 사용승인을 받기까지의 일련의 원인행위가 모두 종전 조례에 이루어졌다면, 이미 종전조례에 의하여 등록세를 면제받을 것이라는 신뢰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함.(행심2000-657, 2000. 8. 29.)

[사례] 사업의 승계와 면제 판단

사업시행인가당시에 시행되던 재개발구역토지 및 건물에 대한 감면조례가 과세요건 완성 전에 폐지된 경우에도 구감면조례 시행당시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고 종전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을 승계하여 명의변경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라 하더라도 도시개발법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면 구감면조례에 의한 도심재개발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면제에 관한 권리 · 의무도 승계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행심2000-635, 2000. 8. 29.)

[사례] 신의 성실의 원칙과 감면적용판단

1.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금반언의 원칙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 형평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납세자의 신뢰보호라는 점에 그 법리의 핵심적 요소가 있는 것이므로, 위 요건의 하나인 과세관청의 공적 견해표명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반드시 행정조직상의 형식적인 권한분장에 구애될 것은 아니고 담당자의 조직상의 지위와 임무, 당해 언동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그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가능성에 비추어 실질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 보건사회부장관이 “의료취약지 병원설립운영자 신청공고”를 하면서 국제 및 지방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하였고, 그 후 내무부장관이나 시 · 도지사가 도 또는 시 · 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조례제정을 지시하여 그 조례에 대한 승인의 의사를

미리 표명하였다면, 보건사회부장관에 의하여 이루어진 위 비과세의 견해표명은 당해 과세관청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납세자로서는 위와 같은 정부의 일정한 절차를 거친 공고에 대하여서는 보다 고도의 신뢰를 갖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판단함.(대판95누13746, 1996. 1. 23.)

나. 지방세의 신뢰보호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의 판단

지방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대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관련규정 부칙에서 ①적용기간을 명확히 두어 적용하는 경우, ②일반적인 경과규정을 두는 경우(예: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해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 세액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에 의한다), ③일반적인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가 있다.

①과 같이 적용기간을 명확히 두는 경우에는 신뢰보호원칙도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나, ②, ③의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 적용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며, 이는 결국 신뢰의 근거(경제행위)와 과세요건 성립시기 및 관련법령의 개정과 관련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바, 다음과 같은 판례를 참고하여 볼 때, 보유과세는 경제행위하고 난 다음 법령개정 이후 매년 납세의무가 성립되기 때문에 감면규정의 엄격해석논리에 따라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고 취득세와 등록세와 같은 거래과세의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과세요건이 발생되기 때문에 신뢰보호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으로 판시되었다.

[판례]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신뢰보호원칙배제

시세의 과세 또는 면제에 관한 조례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에 있어서 납세의무자의 기득권 내지 신뢰보호를 위하여 특별히 경과규정을 두어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종전 조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에는 종전 조례를 적용해야 할 것이지만, 개정 조례 부칙에서 종전의 규정을 개정 조례 시행 후에도 계속 적용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이상,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불소급의 원칙상 개정 전후의 조례 중에서 납세의무가 성립한 당시에 시행되는 조례를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대판 98두15788, 1999. 9. 3.)

[판례] 지방세법에 의한 신뢰보호와 감면

대도시 외로의 공장 이전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지방세법 제275조가 같은 법 부칙(1994. 12. 22.) 제2조에 따라 1997. 12. 31.까지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그 적용시한 전에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224조(1995. 8. 21. 대통령령 제146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가 개정되어 대도시의 범위에서 부산광역시 및 대구광역시가 제외됨으로써 부동산의 취득 당시에는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나 개정령 시행 전에 부산광역시외로의 공장 이전을 위한 매매계약 등 일단의 원인행위를 한 경우, 위 원인행위시 발생한 취득세 면제에 관한 신뢰는 기득권에 갈음하는 것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대판 97누201, 1998. 11. 13.) ☺

지방세 관련용어 해설

• 不均一課稅(불균일과세)

지방자치단체가 그 주민의 일부에 대하여 不平等한 과세를 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租稅平等의 원칙에 反하는 것이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最小限으로 限定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방세법은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때 또는 일부에 대하여 특별히 이익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 限하여 住民의 일부에 대하여 불평등한 과세를 인정하고 있는데(地稅法 §7,8) 이를 施行하기 위해서는 必要事由, 賦課方法, 稅目 및 稅率 등을 정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 시행한다. 그리고 不均一課稅는 國稅에는 그 例가 없다.

- 편집 실 -